회 의 록

안 건	○ 보고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1-1호. 2026년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1-2호. 2026년 제1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1-3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(안) ○ 심의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1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12871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2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9054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3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1-1-1789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4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3569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5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9059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6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4677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7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1721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8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7570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9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3044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12-2-10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6513)
개 최 일 시	2026년 9월 30일(수요일)
장 소	영상회의
출 석 위 원	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 출석

회 의 내 용

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
제2026-재심-12-1-1호	원안 의결	-
제2026-재심-12-1-2호	원안 의결	-
제2026-재심-12-1-3호	보류	법률적 검토 및 추가 의견수렴 후 시행 여부 재논의
제2026-재심-12-2-1호	일부 보상	붙임1 참조
제2026-재심-12-2-2호	일부 보상	붙임2 참조
제2026-재심-12-2-3호	기각	붙임3 참조
제2026-재심-12-2-4호	보상	붙임4 참조
제2026-재심-12-2-5호	기각	붙임5 참조
제2026-재심-12-2-6호	보상	붙임6 참조
제2026-재심-12-2-7호	기각	붙임7 참조
제2026-재심-12-2-8호	기각	붙임8 참조
제2026-재심-12-2-9호	보상	붙임9 참조
제2026-재심-12-2-10호	보상	붙임10 참조

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12회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

붙임 1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12871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35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면역혈소판감소증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접종 이전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으나 혈소판감소증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ITP를 기왕증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배제할 근거는 약함

○ 반면, 변형 협심증·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은 ITP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관련 근거가 부족하고, 피접종인에게 당뇨병·이상지질혈증 등 심장질환 발생과 관련될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일부 보상(면역혈소판감소증 : 보상, 그 외 질환 : 기각)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2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9054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59세/화이자 1차/무형성빈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골수검사에서 세포충실도 감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등 무형성빈혈 진단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, 접종 후 질환 발생까지의 시간적 개연성과 의학적 설명 가능성이 인정되고, 무형성빈혈의 경우 대부분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

○ 다만, 반복적으로 발생한 동맥혈전증은 접종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하여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, 무형성빈혈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, 예방접종과의 의학적 연관성도 명확하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일부 보상(무형성빈혈 : 보상, 그 외 질환 : 기각)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3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1-1-1789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64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패혈성 쇼크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대장균 요로감염이 백신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고, 접종 이전 요로계 감염이 있었고 요관결석도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접종 26일 만에 사망한 것이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

○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, 예방접종으로 인해 감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·역학적 근거도 부족하며, 혈액 및 소변 배양검사에서 대장균이 확인되는 등 요로감염에서 시작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명확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므로 인과관계를 추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4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3569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72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모세혈관 누출 증후군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유병률이 매우 낮아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역학적 근거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○ 백신 접종 2일 뒤 증상이 발생하여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며, 바이러스벡터 백신 접종 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알려져 있고, 임상경과가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 또한 패혈증의 양상을 보였으나 배양검사에서 균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이를 설명할 만한 명확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5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9059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62세/모더나 3차/횡단성 척수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신경전도검사 등에서도 길랭-바레 증후군에 전형적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길랭-바레 증후군이 확진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

○ 길랭-바레 증후군으로 보더라도 관련 신경학적 증상이 접종 후 약 96일 후 발생하여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, 횡단성 척수염 관련 증상과 진단은 그보다 더 이후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, 최초 증상 발생 8일 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어 예방접종보다는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발생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6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24677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52세/화이자 3차/횡단성 척수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MOG 항체* 관련 질환은 매우 드문 자가면역질환으로,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한적이나, 질환 자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자가면역질환의 발생 과정에서 예방접종이 하나의 유발요인(trigger)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

* MOG-IgG : 수초 희소돌기아교세포 당단백질에 대한 자가항체

○ 예방접종 이후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감염 소견이 있었고 이러한 감염 역시 횡단성 척수염의 유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,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특별법상 인과관계 추정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7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1721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70세/모더나 3차/횡단성 척수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접종 후 4일경 우측 하지 감각저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나, 해당 증상만으로 급성 횡단성 척수염의 발현으로 보기는 어렵고, 실제 하지 위약감 및 보행장애 등 횡단성 척수염에 부합하는 증상은 접종 후 약 88일경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

○ 횡단성 척수염은 관련 연구에서 접종 후 1~42일 이내 발생 위험 증가가 보고된 바 있고, 기간을 더 늘려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례는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8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7570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61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횡단성 척수염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피접종인이 호소한 상지 저림·위약감 등의 증상은 횡단성 척수염의 임상 양상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, MRI에서도 횡단성 척수염 진단을 뒷받침할 만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 적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. 오히려 영상검사에서 경추 추간공 협착, 요추 디스크 질환 및 척추관 협착 등이 확인되어 관련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있으며, 관련 증상이 예방접종 후 약 60일 이상 경과하여 발생하여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도 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기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9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3044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여성/73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면역혈소판감소증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기존 심의에서 면역혈소판감소증에 대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 지원받은 이후에도 혈소판 수치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며 치료가 지속된 점은 면역혈소판감소증의 임상경과에 부합하고, 면역혈소판감소증을 유발할 만한 감염이나 자가면역질환 등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

붙임 10 | **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6513)**

가. 피접종인 정보

○ OOO/남성/66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면역혈소판감소증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○ 기존 심의 당시 면역혈소판감소증 진단 및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점, 이후에도 혈소판 감소증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
- 보상

라. 기타

○ 해당 없음